

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1994년 12월 31일

국무총리 이홍구

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)”을 “(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)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, 동조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여, 이를 제2항으로 하고,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되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”이라 함은 점포·사무실·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9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

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
환경개선부담금(이하 “개선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. 다만,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②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③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·멸실,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개선부담금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

면제한다.

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(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). 다만,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(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단독주택·공공주택 및 기숙사(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)
-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1인 소유 면적·지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
-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

- 제7조(개선부담금의 경감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
 2.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
 3. 종교시설
 4.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 학교의 교육용시설물,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,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
 5.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
 5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 7.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
 8.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
 9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
 10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
-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의3(공시송달) 부과대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인한 부과고지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

- 다.
- 제14조제2항중 “자동차는 반기별 8,100원으로 한다.”를 “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.”로 한다.
- 제27조제2항중 “환경오염방지기금”을 “환경관리공단”으로 한다.
-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개정이유
제57차 행정쇄신위원회(1994. 9. 16)에서 의결·확정된 『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』을 근거로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골자
- 가. 부과대상시설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1,000m²이상 시설물에서 160m² 이상 시설물로 함(영 제4조제1항).
- 나.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준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(농림지역은 제외)으로 확대함(영 제4조제4항).
- 다.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고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로 함(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).
- 라. 부담금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면제대상을 크게 축소하여 현행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97년까지만 잠정적으로 경감하도록 함(영 제6조 내지 제7조 및 부칙).
- 마.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함(영 별표 6의2).